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7. ~ 10.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의안 번호	제3766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김미연 의원, 김영진 의원,

발의자 : 장경원 의원, 오행숙 의원,
서선란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소아동 정의 신설(안 제2조제10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에 관한 사업 및 지원사항 신설(안 제3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5. 예산상황 : 불입(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10.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제3항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 9. (생략) 10.(신설)	제2조(정의) 1. ~ 9. (현행과 같음) 10.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 ②.(생략) ③. (신설)	제3조 (책임 및 비용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자립지원 사업 시행 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근거 마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김 미 연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2. 9. 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43호, 2022. 9. 15.,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비
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
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개정, 2022.09.15>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 2(사례결정위원회) <개정, 2022.09.15>

-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 ③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6.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2.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급식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제1절 아동급식 소위원회

제21조(구성) 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1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단체
2. 자원봉사단체
3. 시민단체
4. 급식단체(업체)
5. 음식업협회
6. 영양사협회
7. 지역아동센터

제22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7.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8.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강구
9. 아동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
10.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지원대상) ①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하는 아동
2.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24조(지원방법) 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 식사제공 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2절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등

제25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순천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2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과장 및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
5.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등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등

제30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동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32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제3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구성)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이하 제4장제3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제35조(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6호, 2020.12.31>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
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443호,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이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유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67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신정란 의원,
서선란 의원, 이영란 의원,
이세은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안 제3조)

라.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4조~제5조)

리.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안 제6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순천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시장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보험가입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유승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68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장경원 의원, 이영란 의원,
박계수 의원, 서선란 의원,
강형구 의원, 양동진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최미희 의원, 유승현 의원,
오행숙 의원, 정광현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 1】

순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한다.

제21조(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민의 자각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인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과 제1항에 따른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 기념 행사
2.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에 관한 행사
4. 모범·효행 청소년,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
6.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의 달)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에 관한 행사 3. 모범·효행 청소년, 모범청소년 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민의 자각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인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과 제1항에 따른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 기념 행사 2.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에 관한 행사 4. 모범·효행 청소년, 모범청소년 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 6.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청소년 행복의 날 기념행사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회원 장경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69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장경순 의원, 유승현 의원,
최현아 의원, 이영란 의원,
김태훈 의원, 강형구 의원,
신정란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포상 조례」

【붙임 1】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장경순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순천시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순천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숭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07.3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현 의원)

의안 번호	제3770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정광현 의원, 김영진 의원,
장경원 의원, 오행숙 의원,
신정란 의원, 최미희 의원,
서선란 의원, 유승현 의원,
최현아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5. 예산상황 : 불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 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정 광 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장 스톱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08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21호, 2018. 10.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순천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순천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무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보호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제5호·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은 순천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역연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관리

5.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아동·여성보호 및 복지업무 담당과장 또는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지역연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협의회장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6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7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18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방안 연구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제4장 회의운영

제19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인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3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4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전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 10. 19.)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22. 9. 13.)의 위임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 제21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안 제22조 ~ 제23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부칙)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23. ~ 9. 2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기획예산실-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23.(순천시 공고 제2022-2173)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순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및 특화콘텐츠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순천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순천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순천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2.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순천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순천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

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개정이유

- 2022년 상반기 준공된 신축아파트 지역 통반 신설 및 자연마을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해룡면 관할구역
 - 1개 리, 1개 반 신설 : (리) 유룡, (반) 유룡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1개 리, 6개 반 신설 : 강청6리(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 신축)
- [별표 2] 저전동 관할구역
 - 1개 통, 3개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 9통(오네뜨트윈시티 아파트 신축)
 - 오네뜨트윈시티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5통 6반을 9통으로 편입
 - 2통, 3통, 4통, 5통, 7통 간 중복지번 삭제 및 관할구역 조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15,26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2.(가족보육과-195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8.(기획예산실-111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9.(순천시 공고 제2022-1956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해룡면 상내리 행정리에 유룡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에 유룡을 두며, 기존 행정리 와온 제1반 관할구역의 유통을 본동으로 변경하고 제2반의 본동을 아랫동네로 변경하며, 서면 선평리의 강청5리 다음에 강청6리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각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해룡면	상내	<u>유룡</u>	<u>제1반</u>	<u>유룡</u>
		와온	<u>제1반</u>	본동
			<u>제2반</u>	<u>아랫동네</u>
계	18	<u>103</u>	<u>244</u>	
⋮	⋮		⋮	⋮
서면	선평	강청5	제3반	현행과 같음
		<u>강청6</u>	<u>제1반</u>	<u>금호어울림2차아파트</u> <u>201동</u>
			<u>제2반</u>	<u>202동</u>
			<u>제3반</u>	<u>203동</u>
			<u>제4반</u>	<u>204동</u>
			<u>제5반</u>	<u>205동</u>
			<u>제6반</u>	<u>206동</u>
		모아	제1반	현행과 같음
계	14	<u>67</u>	<u>110</u>	
⋮	⋮		⋮	⋮
총계	163	<u>474</u>	<u>735</u>	

각의 계 및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저전동 2통, 3통, 4통, 5통, 7통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8통 다음
에 9통 4개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저전동	2통	3반	95-14, 57~57-2, 110-1, 111-4, 112-1~112-2, 112-4~113-5, 114-1~116-13, 134-1~134-5
	3통	1반	58~61-8, 107~108-19, 110-3, 110-7~110-8, 111-14, 65-72~65-93, 65-135, 65-138~65-139, 65-141
	3통	3반	65-99~65-123, 65-140, 101~101-1, 101-9, 101-18
	4통	1반	95-7, 95-26~95-52, 95-55~95-57, 96-1~96-3, 112-3, 421-16~421-19, 421-39
		2반	111-3, 111-8~111-13
		3반	97~97-22, 98-1, 98-4~98-7, 99-1, 99-3~99-4, 99-7, 99-16
		4반	65-96~65-98, 100~100-9, 100-13~100-24, 100-28, 101-19~101-24, 106-1~106-3, 421-19
		5반	90-3, 202-3, 203-3, 204-3~204-5, 205-3~205-5, 206-1~206-39, 208-1~208-19, 222~222-2, 222-13~222-14, 222-26~222-28, 223-1~223-2, 223-5, 223-9, 223-13, 223-21, 224-1, 224-10, 224-18, 225-1, 403-3, 421-32~421-35, 421-40, 421-46
	5통	1반	220-2~220-19, 221-1~221-25, 222-3~222-12, 223-3~223-4, 223-10~223-23, 224-17, 245-3, 246-18~246-45, 247~247-19, 248-5~248-10
		2반	233-1~233-25, 234-1~234-38, 238, 238-1
		3반	235-1~235-30, 236-1~236-28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u>7통</u>	<u>5반</u>	<u>231-1~231-24, 232-1~232-17</u>
		<u>6반</u>	<u>삭제(9통으로 편입)</u>
		⋮	⋮
		<u>1반</u>	<u>86-1, 86-11~86-44, 65-126~65-134</u>
		<u>2반</u>	<u>산1, 산2, 81~81-3, 85-1~85-31, 100-10, 100-12, 100-27, 421-22~421-28</u>
		⋮	⋮
	⋮ <u>9통(신설)</u>	<u>5반</u>	<u>87-1~87-34, 98-2~98-3, 99-2, 99-5, 99-8~99-15, 99-17~99-19</u>
		⋮	⋮
		<u>1반</u>	<u>224-2~224-4, 224-9, 226-2~226-3</u>
		<u>2반</u>	<u>228-1~228-11 오네뜨트원시티아파트</u> <u>101동(202호~1603호)</u>
		<u>3반</u>	<u>228-3 오네뜨트원시티아파트 상가동,</u> <u>102동(201호~1603호)</u>
		<u>4반</u>	<u>229-1~229-17, 230-1~230-23</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해룡면	상내	와온	제1반	유통	해룡면	상내	유통	제1반	유통
			제2반	본동			와온	제1반	본동
			<신설>	<신설>				제2반	아랫동네
⋮	⋮	⋮	⋮	⋮	⋮	⋮	⋮	⋮	⋮
계	18	102	243		계	18	103	244	
서면	선평	강청5	제3반	현행과 같음	서면	선평	강청5	제3반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강청6	제1반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201동
								제2반	202동
								제3반	203동
								제4반	204동
								제5반	205동
								제6반	206동
		모아	제1반	현행과 같음			모아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계	14	66	104		계	14	67	110	
⋮	⋮	⋮	⋮	⋮	⋮	⋮	⋮	⋮	⋮
총계	163	472	728		총계	163	474	735	
⋮					⋮				
현행					개정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저전동	2	3	95-14, 57~57-2, 110-1, 11-4, 112-1~113-5, 114-1~116~13, 134-1~134-5
		1	58~61-8, 107~108-19, 110-7~110-8, 111-14, 65-72~65-93, 65-96~65-98, 65-138~65-141
	3	3	65-99~65-134, 101-1~101-18
	4	1	95-7, 95-27~95-55, 112-3
		2	111-3~111-13
		3	96, 97~99-7
		4	65-96~65-98, 100~100-24, 105~106-2
		5	222-26, 222-13~222-14, 222-26, 222-28, 223-2~223-13, 224-1, 224-9~224-10, 225-1, 226-2~226-5
	5	1	220-3, 220-8, 220-10, 221~221-15, 222, 222-3~222-12, 222-17, 222-24, 223-3~222-12, 222-17, 222-24, 223-3, 223-4, 223-10, 223-12, 224-15, 245-3, 246~248-8
		2	224-2~224-4, 226-2~226-5, 228-1~228-10, 233-1, 233-2, 234-1~234-36
		3	235-2~235-30, 236-1~236-28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저전동	2	3	95-14, 57~57-2, 110-1, 111-4 , 112-1~112-2, 112-4~113-5 , 114-1~116-13, 134-1~134-5
		1	58~61-8, 107~108-19, 110-3 , 110-7~110-8, 111-14, 65-72~65-93, 65-135, 65-138~65-139, 65-141
	3	3	65-99~65-123, 65-140, 101~101-1, 101-9, 101-18
	4	1	95-7, 95-26~95-52, 95-55~95-57, 96-1~96-3, 112-3, 421-16~421-19, 421-39
		2	111-3, 111-8~111-13
		3	97~97-22, 98-1, 98-4~98-7, 99-1, 99-3~99-4, 99-7, 99-16 65-96~65-98, 100~100-9, 100-13~100-24, 100-28, 101-19~101-24, 106-1~106-3, 421-19
		4	90-3, 202-3, 203-3, 204-3~204-5, 205-3~205-5, 206-1~206-39, 208-1~208-19, 222~222-2, 222-13~222-14,
		5	222-26~222-28, 223-1~223-2, 223-5, 223-9, 223-13, 223-21, 224-1, 224-10, 224-18, 225-1, 403-3, 421-32~421-35, 421-40, 421-46
	5	1	220-2~220-19, 221-1~221-25, 222-3~222-12, 223-3~223-4, 223-10~223-23, 224-17, 245-3, 246-18~246-45, 247~247-19, 248-5~248-10
		2	233-1~233-25, 234-1~234-38, 238, 238-1
		3	235-1~235-30, 236-1~236-28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u>5</u>	<u>231-1~231-24, 232-1~232-16</u>			<u>5</u>	231-1~231-24, 232-1~232-17
		<u>6</u>	<u>229-1~229-16, 230-1~230-23</u>			<u><삭제></u>	<u><삭제(9통으로 편입)></u>
⋮	⋮	⋮	⋮	⋮	⋮	⋮	⋮
	<u>7</u>	<u>1</u>	<u>86-1, 86-11~86-44</u>		<u>7</u>	<u>1</u>	<u>86-1, 86-11~86-44,</u> <u>65-126~65-134</u>
		<u>2</u>	<u>산1, 산2, 81~81-3, 85-1~85-18,</u> <u>100~100-10, 100-82,</u> <u>421-22~421-28</u>			<u>2</u>	<u>산1, 산2, 81~81-3, 85-1~85-31,</u> <u>100-10, 100-12, 100-27,</u> <u>421-22~421-28</u>
⋮	⋮	⋮	⋮	⋮	⋮	⋮	⋮
	<u>7</u>	<u>5</u>	<u>87-1~87-34, 98-2~94-10,</u> <u>99-5~99-1</u>		<u>7</u>	<u>5</u>	<u>87-1~87-34, 98-2~98-3,</u> <u>99-2, 99-5, 99-8~99-15,</u> <u>99-17~99-19</u>
⋮	⋮	⋮	⋮	⋮	⋮	⋮	⋮
					<u>9</u>	<u>1</u>	<u>224-2~224-4, 224-9,</u> <u>226-2~226-3</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2</u>	<u>228-1~228-11오네뜨원시티아파트</u> <u>101동(202호~1603호)</u>
						<u>3</u>	<u>228-3 오네뜨원시티아파트</u> <u>상가동, 102동(201호~1603호)</u>
						<u>4</u>	<u>229-1~229-17, 230-1~230-23</u>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3개 리·통, 10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69	872	3	
반 장	2,396	2,406	1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64,280	-3,240	-15,260	-15,260	-15,260	-15,260
세입(a)	-	-	-	-	-	-
세출(b)	64,280	3,240	15,260	15,260	15,260	15,2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64,280	3,240	15,260	15,260	15,260	15,260
국 비						
도 비						
시 비	64,280	3,240	15,260	15,260	15,260	15,26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5,260천원/연간 (이·통장 3명, 반장 10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3\text{명} = 10,800,000\text{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3\text{명} = 1,800,000\text{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3\text{명} = 1,440,000\text{원}$
- 이.통장 통신비 : $2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3\text{명} = 720,000\text{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10\text{명} = 500,000\text{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최영화(☎749-5453)
자치행정팀장 남기윤(☎749-5625)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됨에 따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조례(안) 제3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추가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조례(안) 제7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조례(안) 제11조 ~ 1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9.(가족보육과-2008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9.(기획예산실-113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9.(순천시 공고 제2022-1963호)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회의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7조(종전의 제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서명의 유효·무효 확인)”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1항 및”을 “제4항 및”으로, “제2항의”를 “제2항, 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1조부터 제14조, 제18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순천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 <u>외국인</u>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 격을 갖춘 자는</u> 주민투표권이 있 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은</u>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u>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 와 같다.</u>	<u><삭 제></u>
1. 읍·면 및 행정동(이하 “동”이 라 한다)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읍·면·동의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u>사항</u>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
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 ~ 제7조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4조 ~ 제6조 (현행 제5조부터 제
7조까지와 같음)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
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신 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 생년월일을 -----

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
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
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
·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
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에
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
다.

<신 설>

<신 설>

-----.

-----.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심의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
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
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
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
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
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
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
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
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업무팀
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
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회의결서
를 첨부한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
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
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
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
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

----- 제4항 및 --
---- 제2항, 법 제26조 제1항,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순천시 주민투표에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 제3항과 「 <u>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u> 」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u>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순천시 및 읍·면·동(○책중 ○권)

※「주민투표법」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ㄱ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ㄴ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순천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사·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의 대 상 및 취 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교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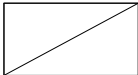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u>순 천 시 장 귀하</u>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
	주 소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의안의 표지)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의 안 명	
제 출 자	순 천 시 장
제 출 연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주소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순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삭제>

<삭제>

일시				장소	
참석사항	재적위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안전					
○ 심의내용 ○ 의결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의결서					

<삭제>

[illegible]

주민투표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09. 2. 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시행일: 2022. 10. 27.] 제7조제1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

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2조의2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순천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5>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5.11.15>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6.15>

1. 읍·면 및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5, 2015.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2015.12.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5, 2015.12.31>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개정 2009.06.15>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06.15>

1. 순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7.01.09, 2012.08.06, 2018.10.01>

④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회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83호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개정이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정의) 정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1항 삭제로 관련 근거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 삭제로 관련 근거법 개정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용어로 개정
 -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용어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0.(가족보육과-194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8.(기획예산실-112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8.(순천시 공고 제2022-1953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활동보조서비스” ” 를 “ “활동지원급여” ”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활동보조인” ” 을 “ “활동지원인력” ” 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한다.

제5조 중 “활동보조인” 을 “활동지원인력” 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을 “(활동지원급여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 를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를 “대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를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 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을 “활동지원급여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을 “(활동지원인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 을 “활동지원인력” 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인” 을 “활동지원인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 를 “활동지원급여이용자” 로, “활동보조인” 을 “활동지원인력” 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활동보조서비스” 를 “활동지원급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u>활동보조서비스</u> ”라 함은 장애인 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 <u>활동보조인</u> ”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u>활동보조서비스</u> 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6.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활동지원급여</u> ”----- ----- ----- ----- ----- -. 4. “ <u>활동지원인력</u> ”----- ----- <u>활동지원급여</u> <u>여</u> ----- -----. 5. 6. (현행과 같음)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u>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u>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 ----- ----- <u>활동지원인력</u> ----- <u>활동지원급여</u> - ----- ----- -----.
제6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 ----- ----- ----- -----.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u>활동보조서비스</u> 지원 2. ~ 9. (생략) 제8조(<u>활동보조서비스</u> 지원) ① <u>활동보조서비스</u>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활동보조서비스</u>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u>활동보조서비스</u>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u>활동보조서비스</u>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u>활동보조서비스</u>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 <u>활동지원급여</u> ----- -- 2. ~ 9. (현행과 같음) 제8조(<u>활동지원급여</u> 지원) ① <u>활동지원급여</u>----- -----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② ---- <u>활동지원급여</u>----- -----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③ ---- <u>활동지원급여</u> 지원대상자----- ----- --- <u>활동지원급여</u>를 ----- --. ④ ---- <u>활동지원급여</u>----- ----- ----- -----.
---	--

제9조(<u>활동보조인</u>) ① 지정된 사업기관은 <u>활동보조인</u>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u>활동보조서비스</u>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u>활동보조인</u>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추가 지원) 시장은 <u>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u>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u>활동보조인</u>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활동보조서비스</u> 지원 2. ~ 7. (생략)	제9조(<u>활동지원인력</u>) ① ----- ----- <u>활동지원인력</u>----- ----- <u>활동지원급여</u> <u>여</u> ----- --. ② ----- <u>활동지원인력</u>----- ----- ----- ----- -----. 제10조(추가 지원) ----- <u>활동지원급여이용자</u>----- ----- <u>활동지원인력</u> ----- ----- --. 제14조(센터의 사업) ----- ----- -----. 1. <u>활동지원급여</u> ----- 2. ~ 7. (현행과 같음)
--	---

【붙임 1】 관련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

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35조 삭제 <2011. 7. 28.>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40조 삭제 <2011. 8. 17.>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현행조례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08.16]

(일부개정) 2010.08.16 조례 제1169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그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중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조인) ① 지정된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추가 지원)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제11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다만 장애동료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간 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1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관련 공무원 등

②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소집 방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분기별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기타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센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센터

제1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2호, 2008.11.28>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1조의 2"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의3"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0.08.16>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7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폐지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서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조례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8.(가족보육과-200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8.(기획예산실-1124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9.(순천시 공고 제2022-1954호)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고 자료

○ 조례 규정 조항 적용가능 법률

제2조(적용범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별표2
제3조(과태료부과)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별표3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견진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비교표)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차량을 주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 2. 시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참고자료}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참고자료}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00만원
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납입고지서에 위반사실,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붙임 3】 기존 조례안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09. 1. 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066호, 2009.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차량을 주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3>

1.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
2.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납입고지서에 위반사실,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418호, 1999.04.15>

이 조례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1호, 2000.11.23>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중 "출장소"를 삭제한다.

8.부터 1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8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 6.

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점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사전점검대상 시설(제3조) :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
 - 제3조제1항 본문 중 “건축물로 한다”를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8. 18.(가족보육과-2000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8. 19.(기획예산실-112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8. 19.(순천시 공고 제2022-1959호)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건축물로 한다”를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법 제7 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 치할 의무가 있는 <u>건축물로 한</u> <u>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u> <u>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u> <u>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u> <u>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u> <u>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u> <u>한다.</u> ② (생 략)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 ----- ----- <u>대상 시설로</u> <u>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u> <u>범위를 정한다. <단서 삭제></u>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참고 자료

○ (안 제3조제1항) 사전점검대상 시설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 삭제

-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 상위법률 관련 조항 발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

【붙임 2】 기존 조례안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82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17.09.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09.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같다.<개정 2017.09.29>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7.09.29>

② 사전점검 실시에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17.09.29>]

③ <삭제 2017.09.29>

④ <삭제 2017.09.29>

⑤ [제2항으로 이동 <2017.09.29>]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제6조(시의 의무) 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③ 모니터 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9>

② 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결과에의 반영) ①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09.29>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개정 2017.09.29>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04.06.18>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2호,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71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발 의 자 : 신정란 의원, 양동진 의원,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추진사업 등 (안 제5조)
- 라. 홍보 및 단체 육성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포상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불입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 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4조(지원계획 수립)

- 시장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꿀벌(양봉·한봉) 기자재, 병해충 방제약품 및 밀원수립 조성 등 지원
- 2022년 기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484,000	-282,000	-293,000	-303,000	-303,000	-303,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484,000	282,000	293,000	303,000	303,000	303,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1,484,000	282,000	293,000	303,000	303,000	303,000
국 비	355,000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도 비	392,000	72,000	77,000	81,000	81,000	81,000
시 비	737,000	139,000	145,000	151,000	151,000	151,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82,000		
양봉산업 육성	100,000	250농가×800,000원×50%	
한봉산업 육성	20,000	20농가×2,000,000원×50%	
말벌퇴치장비 지원	6,000	25농가×400,000원×60%	
병해충 방제약품지원	96,000	300농가×320,000원	
밀원수립 조성	60,000	8ha×7,5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김태훈 의원, 동물자원과 야생동물팀장 (협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47호, 2019. 8. 27.,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5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营业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547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72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박계수 의원, 장경원 의원,
서선란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최현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제7조)
- 라. 아이디어 제안(안 제8조)
- 마. 재정지원(안 제9조)
- 바.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7조)
- 자. 공청회 등 개최(안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

【붙임 1】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순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제10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好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영양교사, 교사,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내·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

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의 먹거리 이용 실태조사
- 안 제9조(재정지원)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 안 제16조(위원회의 운영)의 위원 수당 등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먹거리 보장 사업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박계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 · 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78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0.6.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초등학교 입학 지원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지원 기준 (안 제3조)
 -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한도(예산의 범위내) : 1인 100,000원
 - 지원 방식 :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안 제4조, 안 제5조)
 -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하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말함.
 -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신청 자격은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함.
- 지원 절차 (안 제6조)
 - 입학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관할 읍·면·동에서 추진.
 - 입학 지원금 지급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 연도 10월 30일까지로 함.
- 지원금 환수 (안 제7조)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입학 지원금 환수함.
 -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미 충족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15.(가족보육과-2203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9. 6.(평생교육과-744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4.(기획예산실-1262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15.(순천시 공고 제2022-2119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 지원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제5조(지원신청 자격) 입학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

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0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교육지원청 「2022~2026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자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872	0	236	225	208	203
세입(a)	0	0	0	0	0	0
세출(b)	872	0	236	225	208	20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872	0	236	225	208	203
시비	872	0	236	225	208	20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3년) 2,360명 × 100,000원 = 236,000천원
- (2024년) 2,247명 × 100,000원 = 224,700천원
- (2025년) 2,076명 × 100,000원 = 207,600천원
- (2026년) 2,021명 × 100,000원 = 202,1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신 은 숙 (☎749-6753)
교육지원팀장 남 현 순 (☎749-6761)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773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최병배 의원, 양동진 의원,
강형구 의원, 서선란 의원,
최현아 의원, 최미희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2조)
-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감면, 분할납부,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
-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붙임 2(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여 감면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3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산정방식 및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5,930	3,186	3,186	3,186	3,186	3,186
세입(a)	15,930	3,186	3,186	3,186	3,186	3,186
세출(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 비		해	당	없	음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사용료	15,930	3,186	3,186	3,186	3,186	3,186

○ 산출근거

▪ 관의 지름 × 개월 수

- 220,000원(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 12개월 = 2,640,000원

▪ 공시지가 × 허가면적 × 3/100

- 53,500원 × 340m² × 3/100 = 545,700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

[별표 1]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 사용[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146^2 \times 60$
4. 흙 · 돌 · 모래 · 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 · 성토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

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안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순천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별지 서식]

접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시도지사/시군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시도지사/시군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통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시도지사/시군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영수증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세입징수관 계좌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_____은행		

268mm×190mm(일반용지 50g/㎡(재활용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

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

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소관부서
1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28	도시발전국 재산관리과
2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27	시설국 건설과
3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23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4	보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20	산업안전국 해양수산과
5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16	안전재난과
6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13	해양수산관광국 해양정책과
7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01	안전건설교통국 친수하천과
8	구리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31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9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30	건설도시국 건설과
10	태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29	산업건설국 해양산업과
11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25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과
12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23	안전도시국 건설과
13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9	경제문화농업국 해양수산과
14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8	경제복지국 철강항만과
15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022-08-18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1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7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17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6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8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6	해양수산과
19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6	교통건설국 생태하천과
20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2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21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0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22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5	환경국 하수관리과
23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4	해양수산물국 해양항만과
24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2	안전건설교통국 하수과

연번	조례명	공포일	소관부서
25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1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26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	2022-07-15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과
27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14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28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13	건설도시국 건설과
29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06	도시해양국 해양산업과
30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05	환경사업단 생태하천과
31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6-30	문화관광국 해양수산과
32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022-05-27	안전건설국 건설과
33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5-16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34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5-13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
35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022-05-13	시민안전국 도로과
36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5-10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37	부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5-03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
38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4-27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39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2022-03-31	해양수산과
40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0	해양농수산물국 해운항만과
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19	도시안전국 건설과
42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9-15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4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26	창조경제국 해양수산과
44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10	국제도시건설국 농수산과
4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5	안전도시국 건설과
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4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4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4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4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1	안전도시국 건설과

연번	조례명	공포일	소관부서
49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29	도시관리국 건설과
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28	안전건설국 건설관리과
5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28	도시건설국 건설과
52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28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53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7-27	안전도시국 건설과
54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6-30	도시국 건설과
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022-08-02	도시관리국 건설과

참고 3

기타사항

□ 최근 5년 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건수	2	2	2	2	2	
금액	3,043	3,069	3,072	3,150	3,186	

□ 관련 공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및 배포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916(2022.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법 제13조 개정 규정*('22. 3. 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참고·권고적 성격으로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 공유수면 및 내수면 공유수면 관련 부서로 이송 요망

불임 자치법규안(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끝.

전라남도



수신자 목포시장(해양항만과장), 여수시장(해양항만과장), 순천시청(순천항로전과장), 나주시청(건설과장), 광양시장(철강항만과장), 담양군수(안전건설과장), 곡성군수(안전건설과장), 구례군수(건설과장), 고흥군수(해양수산과장), 보성군수(해양수산과장), 화순군수(해양수산과장), 함평군수(해양수산과장), 강진군수(해양수산과장), 해남군수(해양수산과장), 영암군수(산림해양과장), 무안군수(해양수산과장), 함평군수(축수산과장),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장성군수(안전건설과장), 완도군수(해양정책과장), 진도군수(진도항만개발과장), 신안군수(해양수산과장)

주무관 서광석 항만개발팀장 이광남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전관 2022. 2. 25.

협조자

시행 해운항만과-3052 (2022. 2. 25.) 접수 순천만보전과-3666 (2022. 2. 25.)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해운항만과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6844 팩스번호 061-286-4794 / kwang3460@korea.kr / 비공개(5)